

瑞山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7. 10. 7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7. 9.12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7. 9.19
- 라. 上程日字 : 1997. 9.27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總務課長 朴相龍)

가. 提案理由

- 주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업무시행에 따라
- 동 업무의 역무 제공에 따른 수수료징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신설함.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

- 주대임대차 계약시의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는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97.9.1부터 시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 등을 위하여 읍.면.동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사항으로써,
- 동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본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증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장, 확인등 19개분야 102개 업무로써, 여리 실과(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 본 조례에 대한 총관부서 없이 해당실.과별로 수수료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을 요구할 경우 농수산, 도시계획, 건설 관련 업무 등에 대하여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하는 모순점이 있다고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 없음

5. 討 論 : 없음

6. 少數意見 : 없음

7. 審査結果 : 원안 가결

제안번호	제 151 호
의결년월일	1997. (제 회)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7. 9. 12.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1
----------	-----

제출년월일 1997. 9. 12
제 출 자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주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시행과 관련하여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신설함.(별표1)

3. 참고사항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증명수수료요율표중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의

1. 일반행정관계란중 “④ 내지 ⑥”을 “⑤ 내지 ⑦”로 하고, “④”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④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1건	6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별표1]				[별표1]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등> 1.일반행정관계 ① ~ ③ (신설) ④ ~ ⑥ 2. ~ 8.	(생략)	(생략)	(생략)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등> 1.일반행정관계 ① ~ ③ ④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⑤ ~ ⑦ 2. ~ 8.	1건	600원	(현행과같음) (현행④내지⑥과 같음) (현행과같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1970·6·26)
(대법원규칙제413호)

개정 1976·4·26 대법원규칙제 606호
1990·2·26 대법원규칙제1109호
1993·11·19 대법원규칙제1272호
1995·11·20 대법원규칙제140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에 일자
확정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
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6·4·26>

제2조 (수수료) ①일자확정청구수수료는 600원으로 한다. 다만, 사문서의 장수
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개정 93·11·19>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공무원은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소정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첨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器機)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0>

[전문개정 90·2·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4·26>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2·26>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11·19>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1·2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1995. 3. 8.) 조례 제5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지적업무 수수료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일람을 할때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 방법) 수수료는 서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서 등과 같이 사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

[별표1]

제 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①인감증명	1	통		300원	일제 신고 등 은 제외함	
	②인감의 개인신고	1	건		200원		
2.	병적에 관한 증명						
	①병적증명	1	통		300원		
3.	신상에 관한 증명						
	①부양사실 증명		"		300원		
4.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①영업주		"		500원		
	②중소기업자		"		500원		
	③광업, 공업, 상업		"		500원		
	④농가, 비농가		"		200원		
5.	권리의 보유자에 관한 증명						
	①업체 보유		"		300원		
6.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각종 신고 및 등록필증		"		300원		
	②생산 실적		"		300원		
	③수출 실적		"		300원		
	④납품 실적		"		300원		
	⑤건물 사용		"		300원		
	⑥공장원료 수요		"		300원		
	⑦분배농지 상환 완료		"		300원		
	⑧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		300원		
	⑨공장등록 증명		"		300원		
	⑩실수요자 증명		"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⑪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 증명							
◦ 신규품목(가스요량)		1	통	3,000	원		
◦ 기책정품목(화정소요량)		"		1,000	원		
⑫시설보유 증명		"		300	원		
⑬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400	원		
1매 추가				100	원		
⑭(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		300	원		
⑮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		500	원		
7.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미분배 농지		"		300	원		
②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 문서		"		300	원	지적관계	
◦ 토지도면		"		300	원	제외	
◦ 건물도면		"		300	원		
③공부열람							
◦ 기본료		시간당		100	원		
◦ 초과료		10분당		100	원		
④인·허가 신고 신청등록 확인 등		1	건	100	원		
8.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1필지, 건축선 측량		1	필지	5,000	원		
②도로 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 교부		1	필지	300	원		
③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		400	원	기준변경	
④도시계획화인원 (단, 도시계획도 또는 지적도사본 첨부인 경우)		"		300	원	1통필지	
		첨부도면		700	원		
		1매당					
		(21cm×17cm)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⑤	환지에정지 분할	1 필지	300원	
⑥	환지에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	300원	
⑦	표준주택 설계도면	"	1,500원	
⑧	환지에정지 변경신청	"	300원	
⑨	채비지 분할 신청	"	300원	
⑩	토지대금 완납 증명	1 건	300원	
⑪	도시계획법 제87조 증명	1 필지	300원	
9.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납세증명	1 통	300원	
②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	300원	
③	세목별 과세증명	"	300원	
④	징수 유예 증명	"	300원	
10.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 공급실적)증명	"	300원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	300원	
③	원천징수 공제증명	"	300원	
④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	"	300원	
⑤	납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	"	300원	
⑥	보상금 지불 증명	"	300원	
⑦	면세 용도 품목증명	"	300원	
11. 주택에 관한 증명				
①	철거 사실증명	"	300원	
②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	300원	
12. 기타 제증명				
①	수산업에 관한 증명	"	300원	
②	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	300원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①	행정서사업 허가 신청	1 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②행정서사영업 허가중 재교부신청	1 건	500원	
③인감의(개인) 신고	"	200원	
④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 신 규	"	500원	
◦ 계 속	"	300원	
⑤토지등급 실정심사 청구 신청	"	500원	
⑥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	500원	
2. 산림관계			
①개간 허가중 교부	"	500원	
3. 농수산 관계			
①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 매	200원	
②가축인공수정소등록사항변경신청	1 건	5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공장시설등록허가신청	"	1,000원	
②공장입지 지정승인	"	1,000원	
③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	"	1,000원	
④사설시장개선 및 갱신허가신청	"	1,000원	
⑤사설시장허가사항의 변경신고	"	500원	
⑥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	1,000원	
5. 건설관계			
①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 점용료의 1,000분의 1 단, 점용허가 300,000원 이하의 경우	건 당	300원	
②사도개설허가 및 축소변경허가신청	"	500원	
③공작물 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	허가시의 (용지비 및 공사비의 보상비 1/1,000 제외)	